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 - 국민대학교 -

의안 번호	3538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2월 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안건명 :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
의견청취안 -국민대학교-

2. 안건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(안) 조서

1)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	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	
변경	학교	대학 (국민대)	합 계	205,674	증) 3,023	208,697	-	금회변경	
			제1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861-1일대	167,743	-	167,743	서고시 제196호 (1974.12.28)	변경없음
			제2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855-2일대	5,991	-	5,991		
			제3 캠퍼스	종로구 평창동 147-2일대	30,548	-	30,548	서고시 제2015-367호 (2015.11.19)	변경없음
			제4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711-1일대	1,392	-	1,392	서고시 제2017-338호 (2017.09.21)	변경없음
			제5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산1-214일대	-	증) 3,023	3,023	-	금회추가

2) 변경사유서

학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학 (국민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시설 편입 : 제5캠퍼스 - 위치: 성북구 정릉동 산1-214일대 - 면적: 증) 3,023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대학교 정문 건너편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학교시설(제5캠퍼스)로 편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함.

나.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(안) 조서

1) 구역계획

구분		구역	면적 (㎡)			비고	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제1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①	51,484	-	51,484	경상대학 / 법과대학 / 사회과학대학 기숙사 공과대학 / 도서관 예술·체육·과학기술대학 / 복지시설
			②	8,182	-	8,182	
			③	19,766	-	19,766	
			④	30,941	-	30,941	
	유지	외부활동구역	⑤	18,606	-	18,606	대운동장, 농구장, 테니스장
	보존	녹지보존구역	⑥	38,764	-	38,764	배후녹지
소 계			167,743	-	167,743		
제2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⑦	2,226	-	2,226	역사관
	유지	상징경관구역	⑧	2,159	-	2,159	명원민속관
	보존	녹지보존구역	⑨	1,606	-	1,606	내부녹지
	소 계			5,991	-	5,991	
제3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-	10,498	-	10,498	서고시 제2015-376호 (2015.11.29.) 세부시설조성계획 완료
	보존	녹지보존구역	-	20,050	-	20,050	
	소 계			30,548	-	30,548	
제4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⑩	1,392	-	1,392	기숙사
	소 계			1,392	-	1,392	-
제5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⑪	-	중) 3,023	3,023	체육대학 및 평생교육원
	소 계			-	중) 3,023	3,023	-
합 계				205,674	중) 3,023	208,697	-

2) 밀도계획

○ 건폐율 계획

캠퍼스	구분		밀도산정기준면적(㎡)		조례건폐율(%)		사용건폐율(%)		계획건폐율(%)		관리건폐율(%)		비고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제1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제1종일반 주거	43,603	164,718	60.0	60.0	12.1	24.9	-	25.3	20.0	30.0	-
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	121,115		30.0		30.0		-		30.0		
	소 계			164,718	164,718	38.0	60.0	25.3	24.9	-	25.3	30.0	
제2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제1종일반 주거	5,991	5,991	30.0	30.0	27.8	27.8	-	27.8	30.0	30.0	-
	소 계			5,991	5,991	30.0	30.0	27.8	27.8	-	27.8	30.0	30.0
제3 캠퍼스	제1종전용주거	제1종전용 주거	22,692	22,692	50.0	50.0	14.96	-	-	15.0	15.58	15.6	-
	제2종일반주거		제2종일반 주거		4,246								
	소 계			26,938	26,938	51.57	51.5	14.96	-	-	15.0	15.58	
제4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제1종일반 주거	1,392	1,392	60.0	60.0	41.1	41.1	-	41.1	50.0	50.0	-
	소 계			1,392	1,392	60.0	60.0	41.1	41.1	-	41.1	50.0	50.0
제5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제1종일반 주거	-	2,981	-	60.0	-	-	-	43.9	-	50.0	금 회 변 경
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	-		-								
	자연녹지	자연녹지	-	42	-	20.0	-	-	-	-	-	-	
	소 계			-	3,023	-	59.4	-	-	-	43.9	-	
합 계			199,039	202,062	39.7	57.9	24.0	21.4	-	24.4	28.0	28.6	

○ 용적률 계획

캠퍼스	구분		밀도산정기준면적(㎡)		조례용적률(%)		사용용적률(%)		계획용적률(%)		관리용적률(%)		비고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제1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제1종일반주거	43,603	164,718	150.0	150.0	104.0	101.8	-	104.0	110.0	110.0	-
	제1종일반주거(자연경관지구)		121,115										
	소계		164,718	164,718	150.0	150.0	104.0	101.8	-	104.0	110.0	110.0	
제2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(자연경관지구)	제1종일반주거	5,991	5,991	150.0	150.0	34.0	33.7	-	33.7	80.0	80.0	-
	소계		5,991	5,991	150.0	150.0	34.0	33.7	-	33.7	80.0	80.0	
제3 캠퍼스	제1종전용주거	제1종전용주거	22,692	22,692	116.0	116.0	38.0	-	-	37.2	50.0	50.0	-
	제2종일반주거	제2종일반주거	4,246	4,246									
	소계		26,938	26,938	116.0	116.0	38.0	-	-	37.2	50.0	50.0	
제4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제1종일반주거	1,392	1,392	150.0	150.0	150.0	149.9	-	149.9	150.0	150.0	-
	소계		1,392	1,392	150.0	150.0	150.0	149.9	-	149.9	150.0	150.0	
제5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제1종일반주거	-	2,981	-	150.0	-	-	-	148.0	-	148.6	금회 변경
	제1종일반주거(자연경관지구)		-										
	자연녹지	자연녹지	-	42	-	50.0	-	-	-	-	-	-	
	소계		-	3,023	-	148.6	-	-	-	148.0	-	148.6	
합계			199,039	202,062	146.0	145.4	94.0	85.0	-	94.0	100.0	102.0	

※ 기정 결정 고시근거 : 서고시 제2025-345호(2025.6.26)

※ 제1캠퍼스 밀도산정기준면적(164,718㎡) = 제1캠퍼스 총면적(167,743㎡) - 비오톱1등급지(3,025㎡)

※ 제3캠퍼스 밀도산정기준면적(26,938㎡) = 제3캠퍼스 총면적(30,548㎡) - 비오톱1등급지(3,610㎡)

※ 제5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(135㎡), 자연녹지지역(42㎡)는 330㎡이하로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함. (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 적용)

※ 건축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건폐율, 계획용적률 운영 변경

※ 건폐율, 용적률 : 소수점 첫째자리로 기재

○ 구역별 용적률 계획

구분	밀도산정기준면적(㎡)		조례용적률(%)		사용용적률(%)		계획용적률(%)		이전용적률(%)		관리용적률(%)		비고	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제1 캠퍼스	①일반관리	51,484	51,484	150.0	150.0	149.65	149.7	-	149.7	-	-	150.0	150.0	-
	②일반관리	8,182	8,182	150.0	150.0	139.24	139.3	-	139.3	-	-	140.0	140.0	
	③일반관리	19,766	19,766	150.0	150.0	207.10	207.1	-	207.1	+60.0	+60.0	210.0	210.0	
	④일반관리	30,941	30,941	150.0	150.0	135.34	123.8	-	135.4	-	-	150.0	150.0	
	⑤외부활동	18,606	18,606	150.0	150.0	0.27	0.3	-	0.3	-	-	5.0	5.0	
	⑥녹지보존	35,739	35,739	150.0	150.0	-	-	-	-	-33.0	-33.0	-	-	
제2 캠퍼스	⑦일반관리	2,226	2,226	150.0	150.0	72.72	72.8	-	72.8	-	-	80.0	80.0	-
	⑧상징경관	2,159	2,159	150.0	150.0	18.65	18.7	-	18.7	-	-	20.0	20.0	
	⑨녹지보존	1,606	1,606	150.0	150.0	-	-	-	-	-	-	-	-	
제3 캠퍼스	①일반관리	10,498	10,498	126.0	126.0	95.39	-	-	95.4	-	-	100.0	100.0	-
	②녹지보존	16,440	16,440	109.0	109.0	-	-	-	-	-	-	-	-	
제4 캠퍼스	⑩일반관리	1,392	1,392	150.0	150.0	149.85	149.9	-	149.9	-	-	150.0	150.0	-
제5 캠퍼스	⑪일반관리	-	3,023	-	148.6	-	-	-	148.0	-	-	-	148.6	금회 변경

※ 기정 결정 고시근거 : 서고시 제2025-345호(2025.6.26)

※ 제1캠퍼스 ⑥녹지보존구역 밀도산정기준면적(35,739㎡) = 제1캠퍼스 총면적(38,764㎡) - 비오톱1등급지(3,025㎡)

※ 제3캠퍼스 ②녹지보존구역 밀도산정기준면적(16,440㎡) = 제3캠퍼스 총면적(20,050㎡) - 비오톱1등급지(3,610㎡)

※ 건축배치계획에 따른 계획용적률 운영 변경

※ 용적률 : 소수점 첫째자리로 기재

3) 높이계획

구분	관리 높이(m)		비고	
	기정	변경		
제1 캠퍼스	①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②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③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④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⑤외부활동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-
	⑥녹지보존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-
제2 캠퍼스	⑦일반관리	• 지표면으로부터 +12m이하	• 지표면으로부터 +12m이하	-
	⑧상징경관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-
	⑨녹지보존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-
제3 캠퍼스	①일반관리	• 해발고도 128m이하	• 해발고도 128m이하	-
	②녹지보존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-
제4 캠퍼스	⑩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16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16m이하	-
제5 캠퍼스	⑪일반관리	-	• 해발고도 121m(4층)이하	금회변경

※ 구역별 높이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높이계획 결정(변경)도 참조

※ 문화재보호구역 높이기준 :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지표면에서부터 7.5m 높이 이후 27°양각선 적용

- 해당구역 : ①~⑦, ⑨, ⑪구역

4) 변경 건축물 조서

구분	구역	건물명	건축면적(㎡)		연면적(㎡)		지상층연면적(㎡)		층수(지하)		비고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제5 캠퍼스	⑪일반	교육연구동	-	1,326.94	-	10,985.24	-	4,474.04	-	4(4)	금회신축
합 계			-	1,326.94	-	10,985.24	-	4,474.04			

※ 건축물의 규모,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상세내용은 결정도면에 의함.

3. 입안사유

- 학교법인 소유의 제5캠퍼스 예정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고, 체육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을 위한 "교육연구동" 신축계획을 반영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- 제5캠퍼스 편입면적 : 3,023㎡

4. 도시관리계획 사항

- 용도지역 : 제1종일반주거지역, 자연녹지지역
- 용도지구 : 자연경관지구
- 도시계획시설 : 학교

5. 주민 의견청취 사항

- 의견청취기간 : 2025. 8. 28 ~ 9. 11.
- 계 재 : 서울시보, 성북구보
- 열 램 장 소 :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, 성북구청 도시계획과
- 의견청취결과 : 주민의견 없음

6. 관련부서 검토의견

협의부서	검토의견	조치계획	반영 여부
서울시 도로관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기준(조례·지침 등) 준수. ○ 보도 위 차량진출입로 설치시 「서울시 보도 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지침」 준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시행시 귀 과(팀)의 의견에 따라 관련 조례·지침을 준수하고 사전협의 하겠음 	반영
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신축 건축물의 전면 폭 계획은 「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·운영기준」 ‘5-2-1. 학교경계부의 건축물 전면 폭 기준’ 과의 정합성 및 차폐감 최소화 방안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금회 신축하는 건축물은 4층 건물이며, 지상층 건축물의 높이가 15m로 계획된 바, 「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·운영기준」 5-2-1(5)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전면폭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▶ 또한, 신축 건축물 입면분절(8.2m)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중압감과 차폐감을 최소화 하고자 함 	반영
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 제8조, 제9조에 따라 빗물 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전 협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 인· 허가 전 해당자치구의 물순환주관부서에 사전 협의 하겠음 	반영
성북구 청소행정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연구동 신축시 대체부지 마련 후 공중 화장실을 신축하거나, 대체부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연구동 내 화장실 개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금회 신축하는 교육연구동 내 화장실을 개방하겠음 	반영
성북구 도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지 구역 내 공공보행로 및 차도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청의 도로시설물 유지·관리가 필요하므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을 검토 ○ 사업시행인가 접수 전 주변 도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협의 바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보행로 및 차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시 구분지상권 설정 등을 검토하겠음. ▶ 사업시행인가 접수 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협의 하겠음. 	반영

협의부서	검토의견	조치계획	반영 여부
성북구 교통행정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릉6길 도로확폭 공간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는 지역주민 및 일반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확폭 공간으로 학교시설(교육용지)로 편입되지 않도록 검토. ○ 정릉로 제5캠퍼스(교육연구동)앞 버스정류소 주변의 교통개선을 위해 버스정차면 증설과 정릉로 도로확폭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편입 토지 구간을 조정 검토. ○ 신축 건물에 연접하여 계단폭 약 3.0m 및 엘리베이터(장애인, 노약자용) 설치를 반영한 공공보행통로 조성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역주민 및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제5캠퍼스(교육연구동) 후면 정릉로6길 6m 현황도로 구간은 학교시설 용지에서 제외 하겠음. ▶ 제5캠퍼스(교육연구동) 앞 주변지역 교통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버스정차면을추가로 증설하겠음. ▶ 현황 계단 연결로를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계단폭 확보 및 엘리베이터(장애인, 노약자용)를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. 	반영

7. 기 타

○ 환경성 등 관련사항 검토결과

- (환경성) 녹지훼손·지형변화·경관·일조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, 사업시행 시 환경저해요소(소음, 진동 등)의 저감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
- (교통성) 당해 계획으로 인해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
- (경관성) 금회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학교 내부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로 계획되어 경관상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

○ 재원조달계획

- 총 사업비는 20,000백만원이며, 재원은 학교 건축기금으로 조달할 예정임

건물명	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합 계
교육 연구동	사업비(백만원)	200	3,300	8,300	8,200	20,000
	비율(%)	1.0	16.5	41.5	41.0	100.0

○ 추진경위

- '74.12.28. :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
- '01.08.16. : 대학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최초 결정
- '25.06.30. :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(안) 신청
- '25.08.25. : 관련기관(부서) 협의 및 주민 열람공고 ('25.8.28~9.11)
- '25.09.16. :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
- '25.10.20. : 제314회 성북구의회 의견청취 (원안가결)
- '25.11.28. : 2025년 제5차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(원안가결)
- '26.01.23. :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

붙임 1.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

2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및 세부시설조성
계획 결정(변경)도(안) 1부

3. 수정가결 요청사항 1부. 끝.

※ 작성자 :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노송이 (☎ 2133-8412)

붙임 1 | 위치도 및 전경사진

□ 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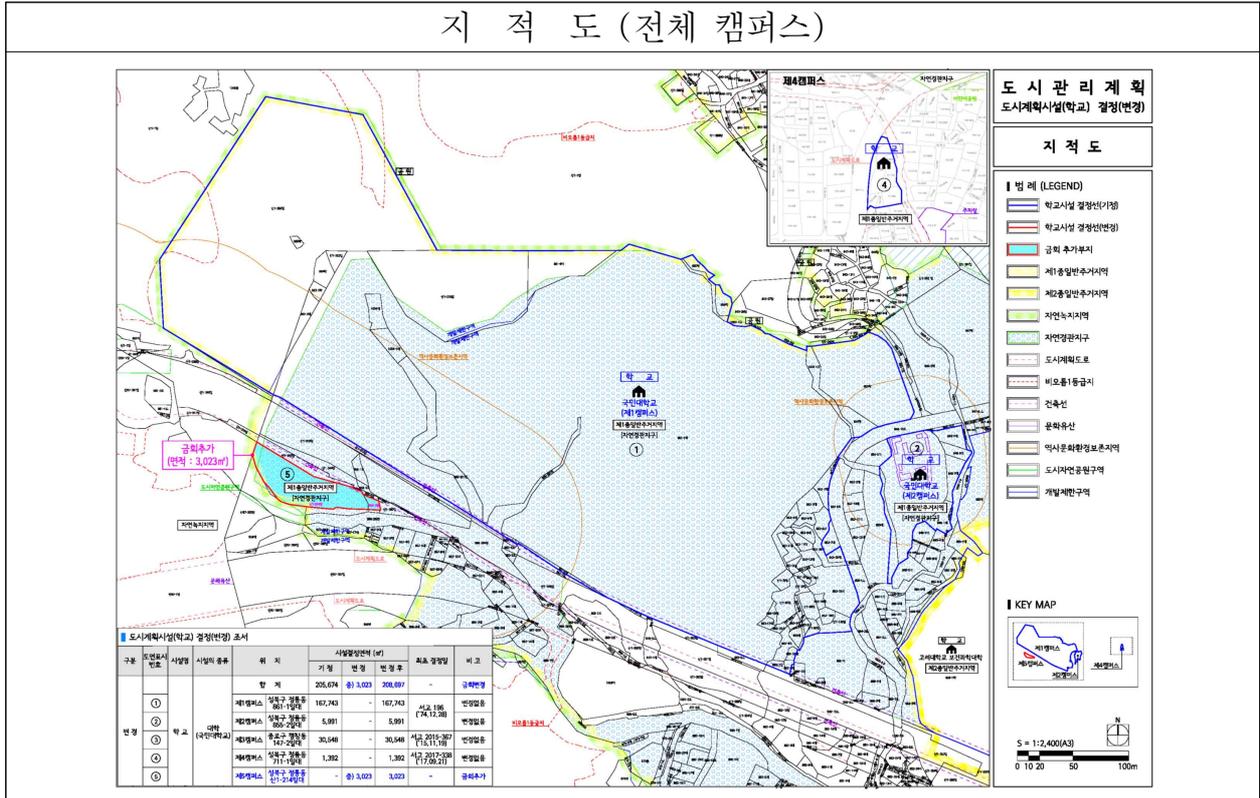
□ 전경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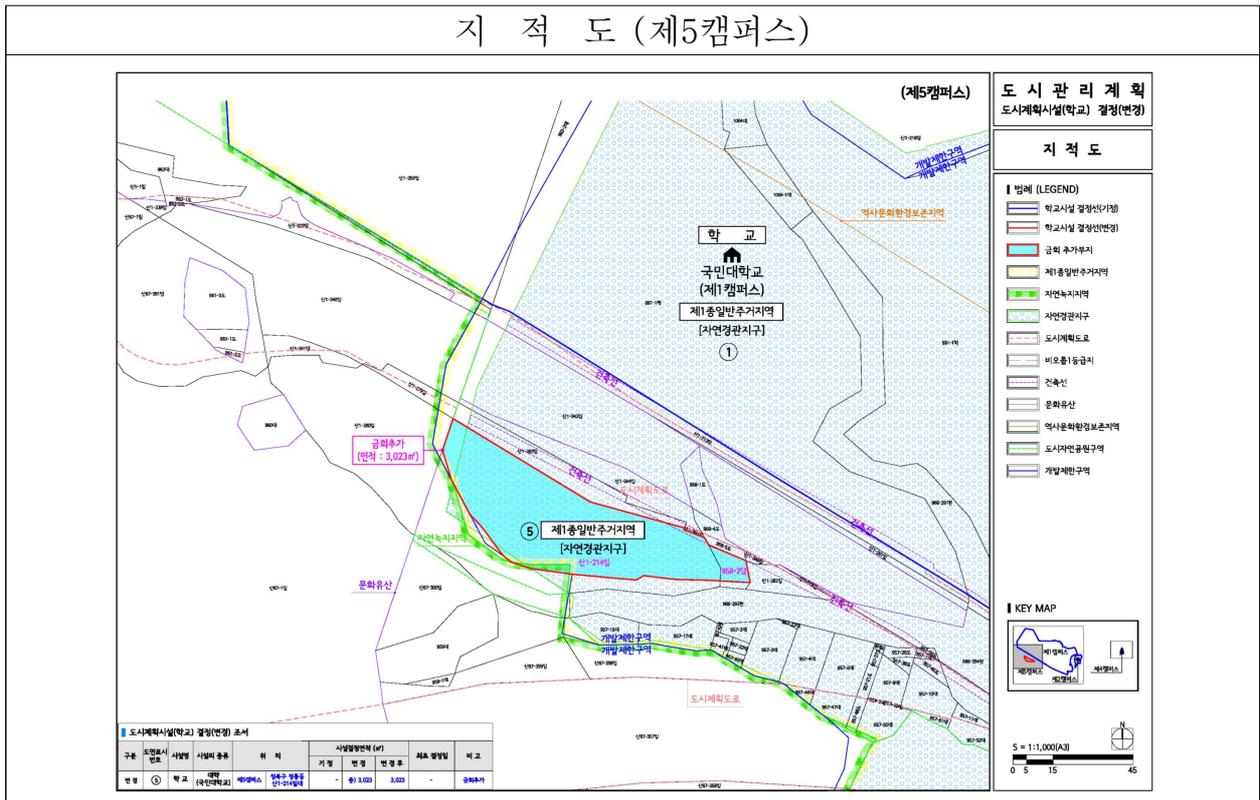
붙임 2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(변경) 및 세부시설조성 계획 결정(변경)도(안)

1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(안)

지 적 도 (전체 캠퍼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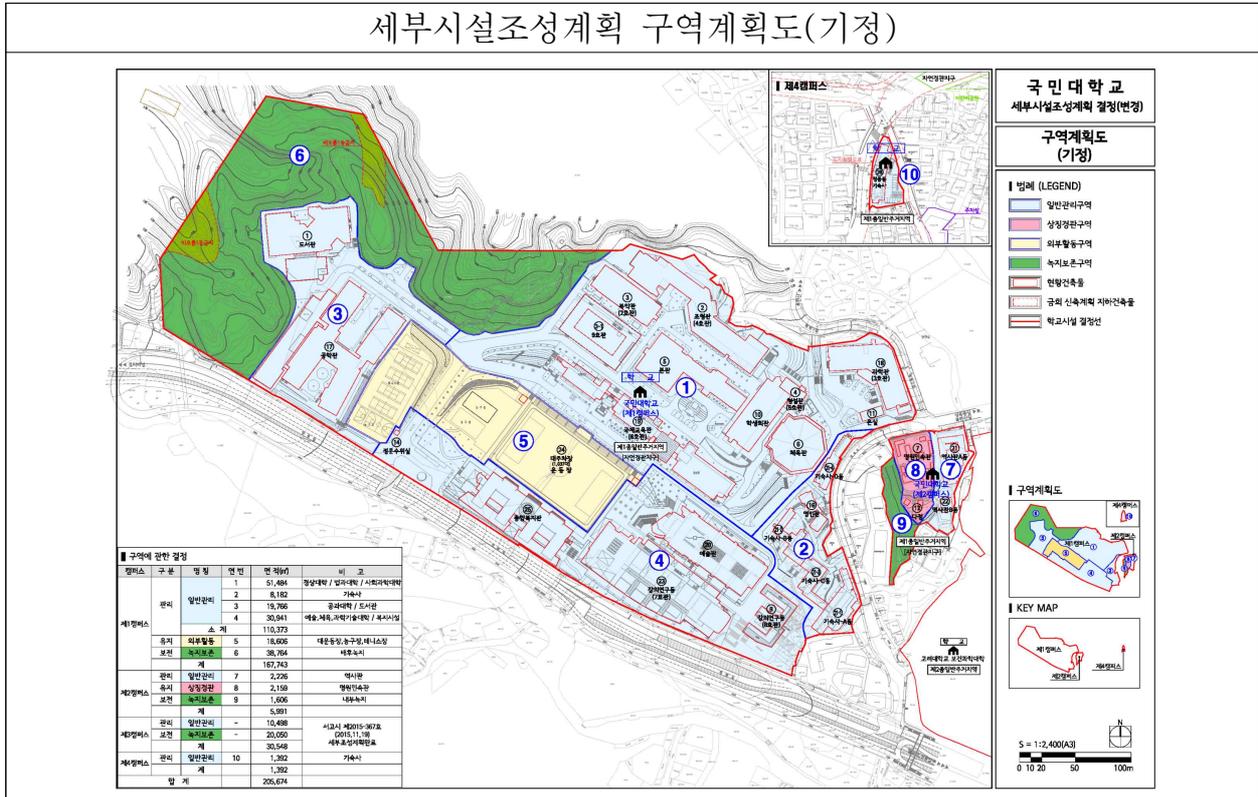


지 적 도 (제5캠퍼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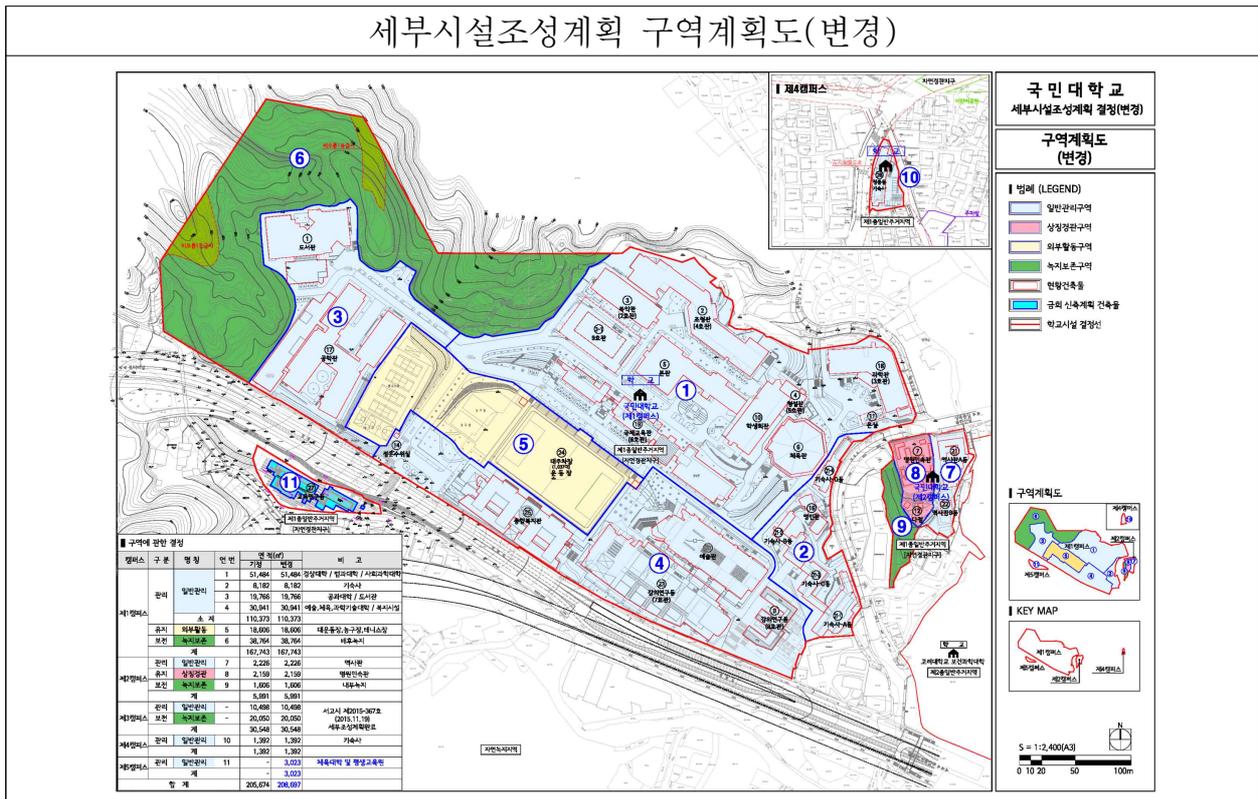


2.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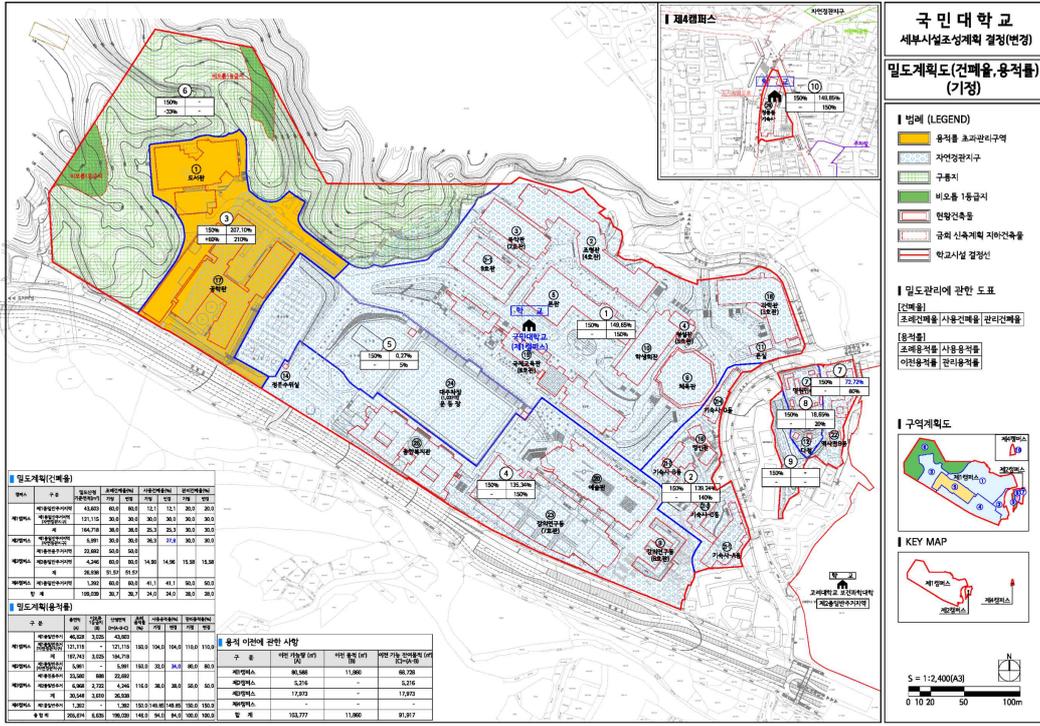
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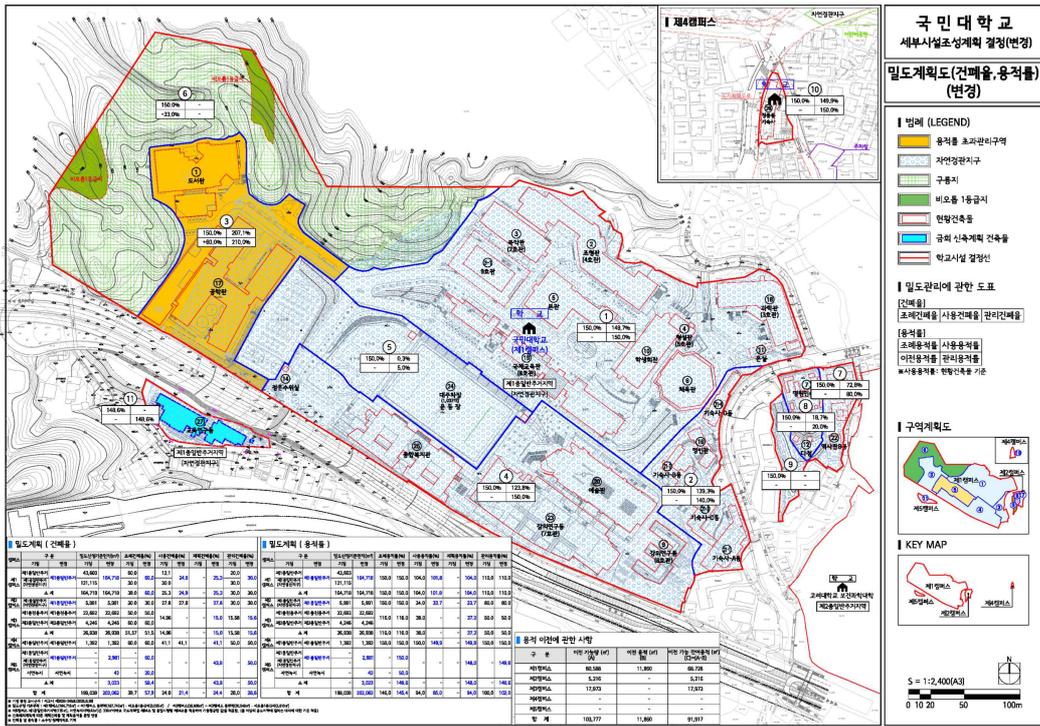
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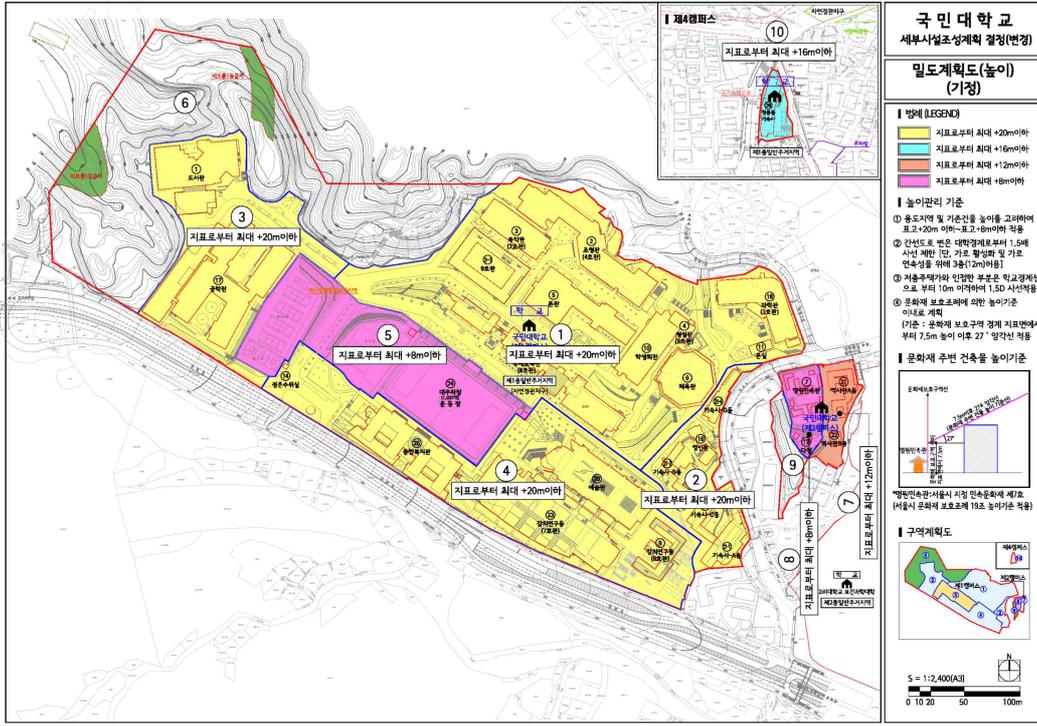
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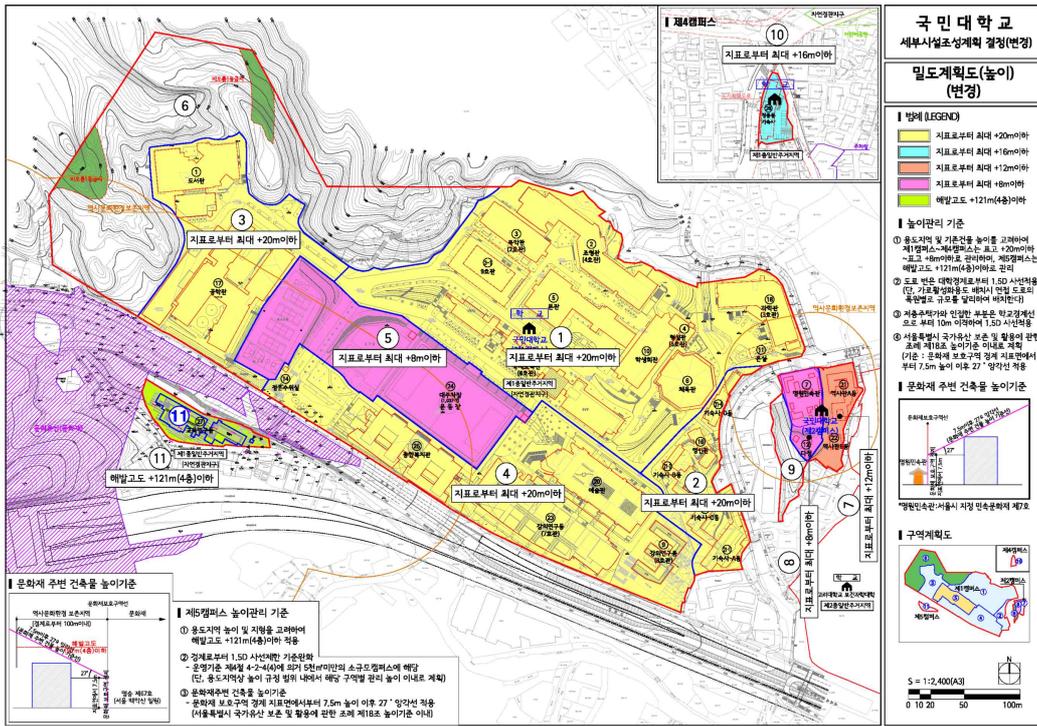
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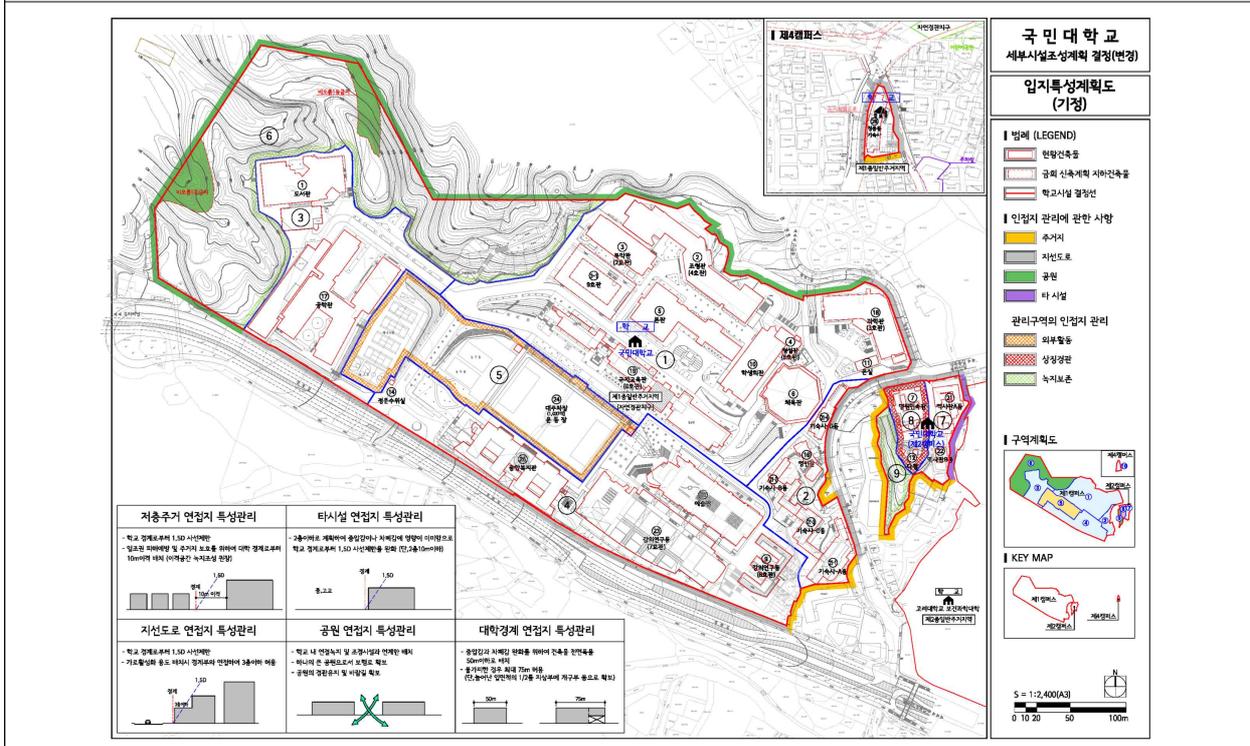
세부시설조성계획 높이계획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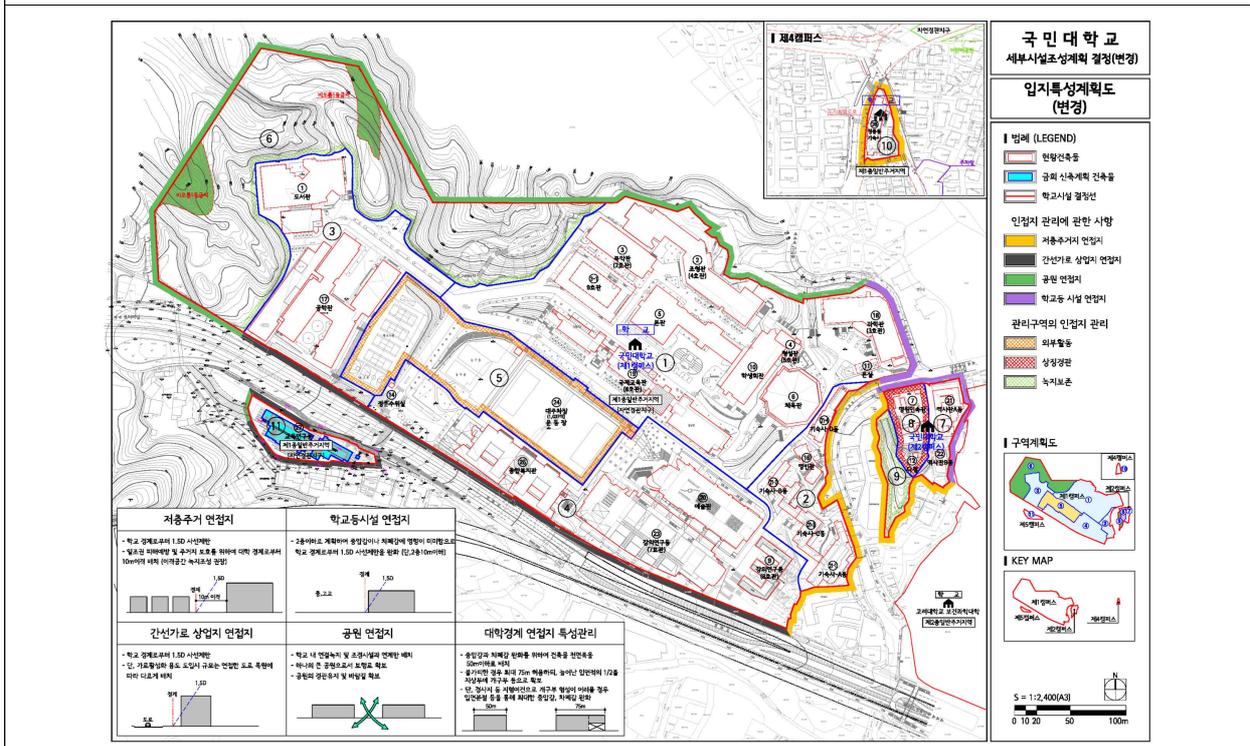
세부시설조성계획 높이계획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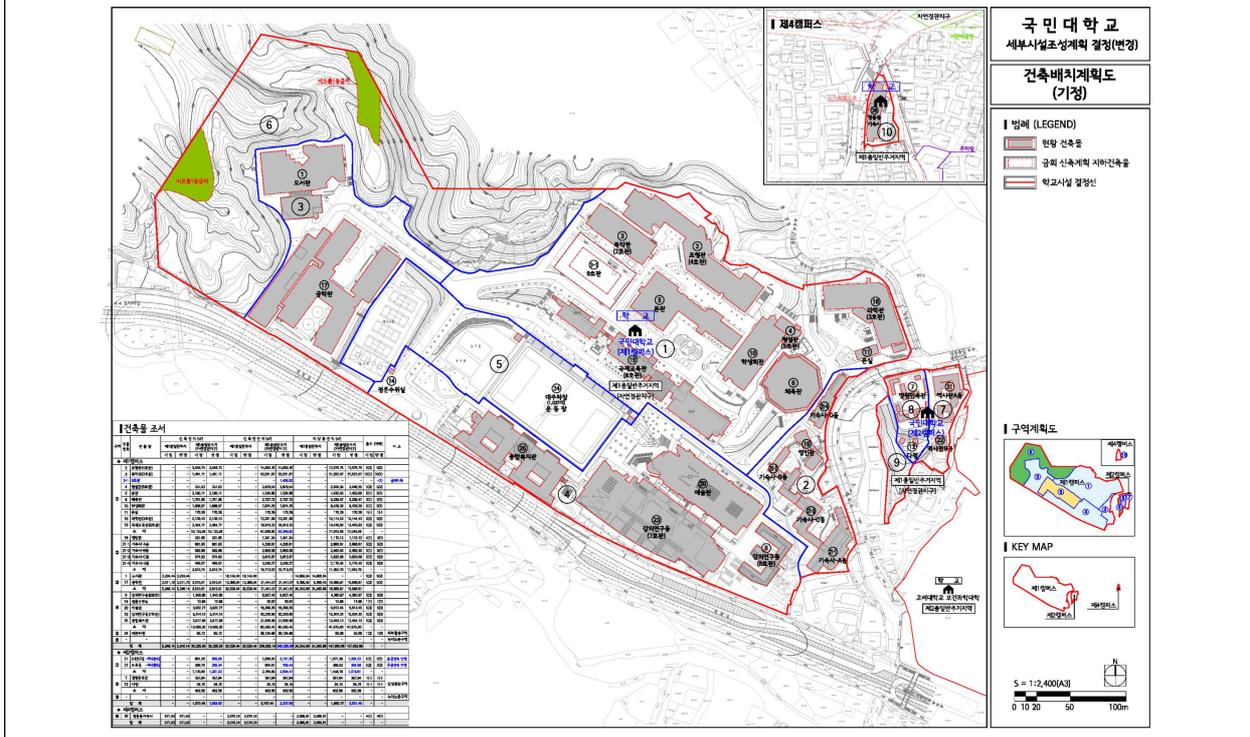
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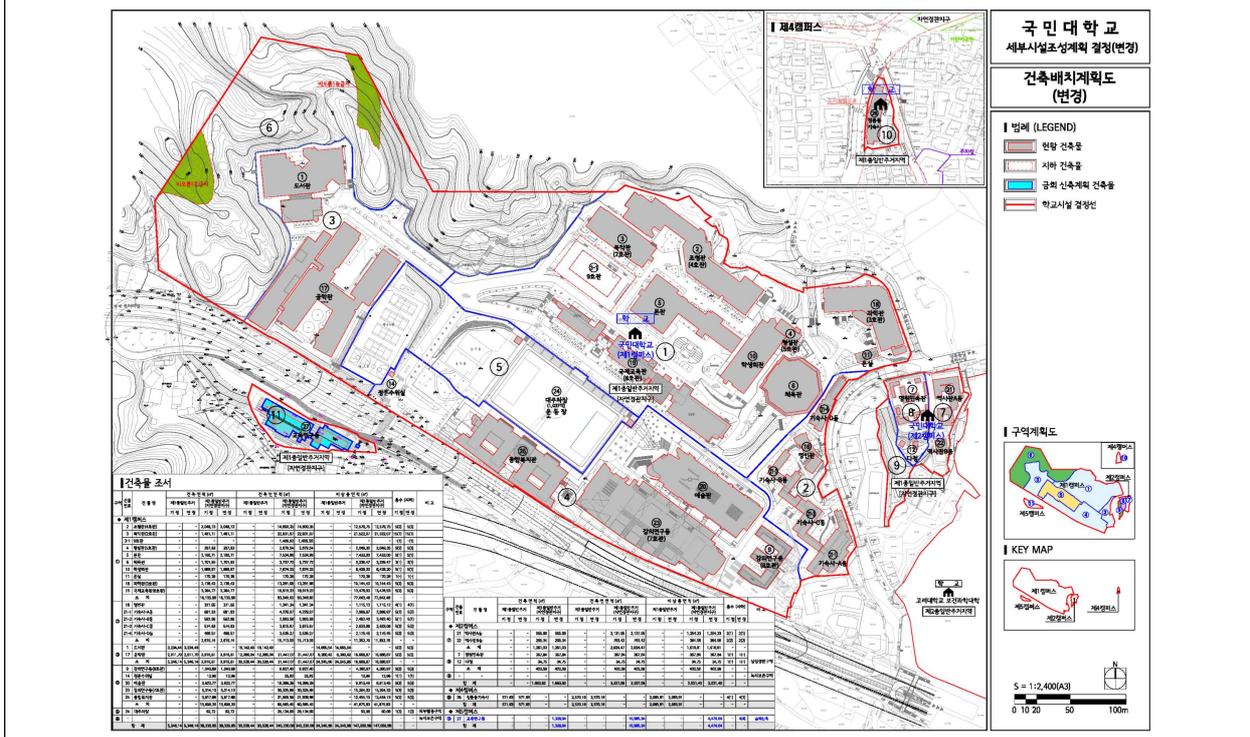
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(변경)



세부시설구성계획 건축배치계획도(기정)



세부시설구성계획 건축배치계획도(변경)



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

■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사항

연번	구분	열람(안)	수정가결 요청(안)	비고
1	면적변경	- 당초 편입면적 기재 • 변경후 : 208,780㎡ • 제5캠퍼스 : 증) 3,106㎡	- 성북구 교통행정과 의견반영 • 변경후 : 208,697㎡ • 제5캠퍼스 : 증) 3,023㎡	제5캠퍼스 면적변경

□ 열람(안)

○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	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	
변경	학교	대 학 (국민대)	합 계	205,674	증) 3,106	208,780	-	-	
			제1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861-1일대	167,743	-	167,743	서고시 제196호 (1974.12.28)	변경없음
			제2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855-2일대	5,991	-	5,991		
			제3 캠퍼스	종로구 평창동 147-2일대	30,548	-	30,548	서고시 제2015-367호 (2015.11.19)	변경없음
			제4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711-1일대	1,392	-	1,392	서고시 제2017-338호 (2017.09.21)	변경없음
			제5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산1-214일대	-	증) 3,106	3,106	-	금회추가

○ 변경사유서

학교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대 학 (국민대)	• 학교시설 편입 : 제5캠퍼스 - 위치: 성북구 정릉동 산1-214일대 - 면적: 증) 3,106㎡	• 국민대학교 정문 건너편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학교시설(제5캠퍼스)로 편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함.

□ 수정가결 요청(안)

○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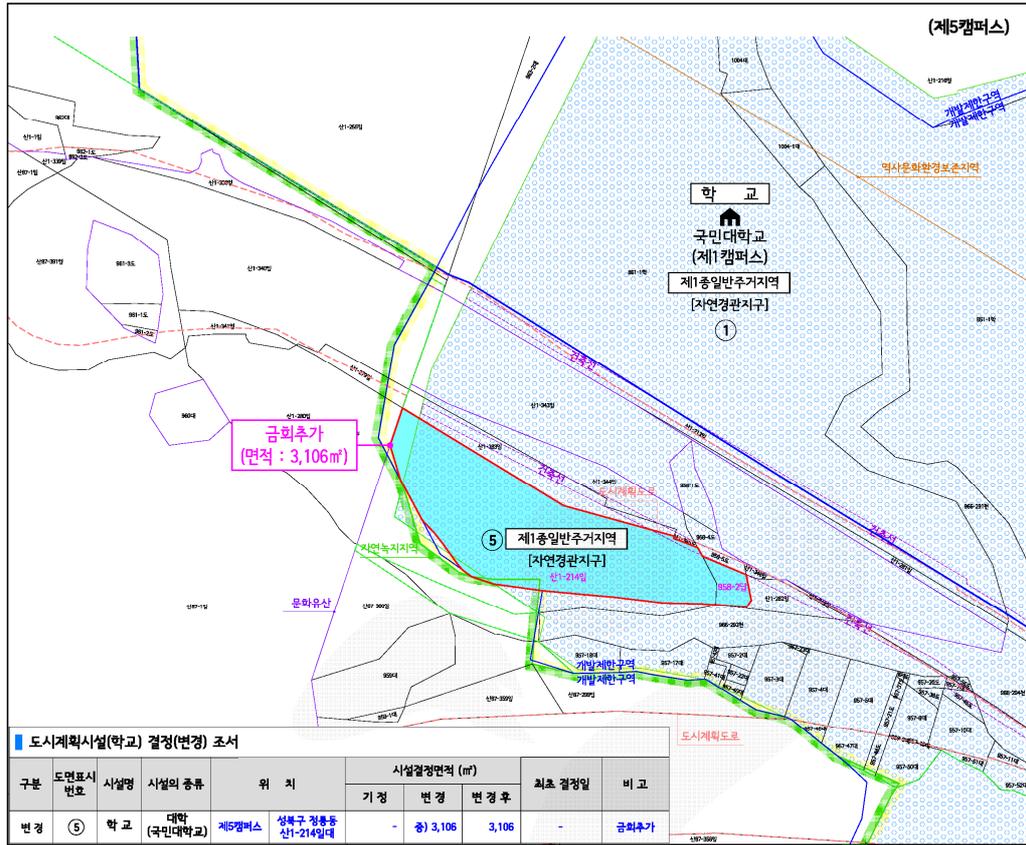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	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	
변경	학교	대 학 (국민대)	합 계	205,674	증 3,023	208,697	-	-	
			제1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861-1일대	167,743	-	167,743	서고시 제196호 (1974.12.28)	변경없음
			제2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855-2일대	5,991	-	5,991		
			제3 캠퍼스	종로구 평창동 147-2일대	30,548	-	30,548	서고시 제2015-367호 (2015.11.19)	변경없음
			제4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711-1일대	1,392	-	1,392	서고시 제2017-338호 (2017.09.21)	변경없음
			제5 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산1-214일대	-	증 3,023	3,023	-	금회추가

○ 변경사유서

학교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대 학 (국민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시설 편입 : 제5캠퍼스 - 위치: 성북구 정릉동 산1-214일대 - 면적: 증 3,023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대학교 정문 건너편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학교시설(제5캠퍼스)로 편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함.

서울특별시

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도면 [열람(안)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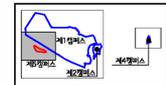
도시관리계획
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

지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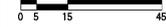
범례 (LEGEND)

- 학교시설 결정선(기정)
- 학교시설 결정선(변경)
- 금회 추가부지
- 제1종일반주거지역
- 자연녹지지역
- 자연경관지구
- 도시계획도로
- 비오름1등급지
- 건축선
- 문화유산
-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
- 도시자연공원구역
- 개발제한구역

KEY MA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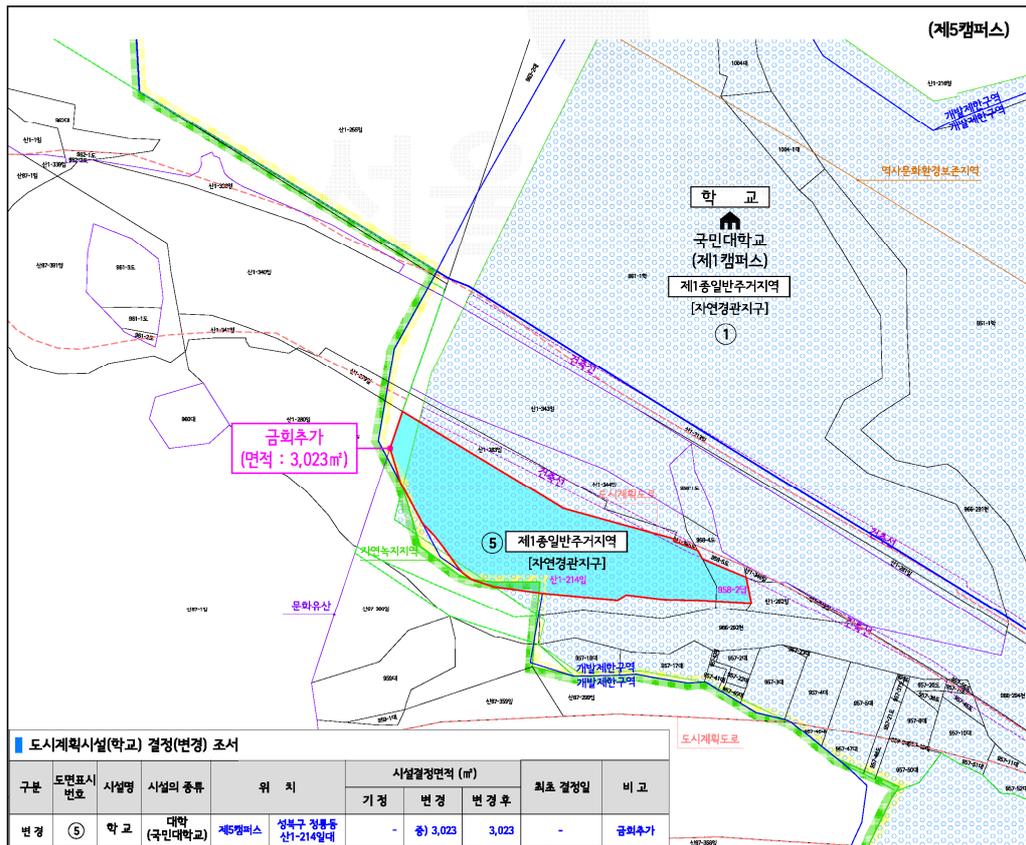
S = 1:1,000(A3)



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시설결정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	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
변경	⑤	학교	대학 (국민대학교)	제5캠퍼스	성북구 정동동 신1-214일대	-	증) 3,106	3,106	-	금회추가

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도면 [수정가결 요청(안)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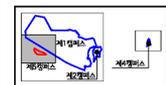
도시관리계획
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

지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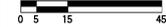
범례 (LEGEND)

- 학교시설 결정선(기정)
- 학교시설 결정선(변경)
- 금회 추가부지
- 제1종일반주거지역
- 자연녹지지역
- 자연경관지구
- 도시계획도로
- 비오름1등급지
- 건축선
- 문화유산
-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
- 도시자연공원구역
- 개발제한구역

KEY MAP



S = 1:1,000(A3)



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시설결정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	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
변경	⑤	학교	대학 (국민대학교)	제5캠퍼스	성북구 정동동 신1-214일대	-	증) 3,023	3,023	-	금회추가

나.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구역계획 변경사항

연번	구분	열람(안)	수정가결 요청(안)	비고
2	구역계획	- 변경면적 : 증) 3,106㎡ - 변경후면적 : 208,780㎡	- 변경면적 : 증) 3,023㎡ - 변경후면적 : 208,697㎡	제5캠퍼스 면적변경

□ 열람(안)

○ 구역계획 결정조서

구분	구역	면적 (㎡)			비고		
		기정	변경	변경후			
제1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①	51,484	-	51,484	경상대학 / 법과대학 / 사회과학대학
			②	8,182	-	8,182	기숙사
			③	19,766	-	19,766	공과대학 / 도서관
			④	30,941	-	30,941	예술·체육·과학기술대학 / 복지시설
	유지	외부활동구역	⑤	18,606	-	18,606	대운동장, 농구장, 테니스장
	보존	녹지보존구역	⑥	38,764	-	38,764	배후녹지
소 계			167,743	-	167,743		
제2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⑦	2,226	-	2,226	역사관
	유지	상징경관구역	⑧	2,159	-	2,159	명원민속관
	보존	녹지보존구역	⑨	1,606	-	1,606	내부녹지
	소 계			5,991	-	5,991	
제3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-	10,498	-	10,498	서고시 제2015-376호 (2015.11.29.) 세부시설조성계획 완료
	보존	녹지보존구역	-	20,050	-	20,050	
	소 계			30,548	-	30,548	
제4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⑩	1,392	-	1,392	기숙사
	소 계			1,392	-	1,392	-
제5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⑪	-	증) 3,106	3,106	체육대학 및 평생교육원
	소 계			-	증) 3,106	3,106	-
합 계			205,674	증) 3,106	208,780	-	

□ 수정가결 요청(안)

○ 구역계획 결정조서

구분		구역	면적 (㎡)			비고	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제1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①	51,484	-	51,484	경상대학 / 법과대학 / 사회과학대학
			②	8,182	-	8,182	기숙사
			③	19,766	-	19,766	공과대학 / 도서관
			④	30,941	-	30,941	예술·체육·과학기술대학 / 복지시설
	유지	외부활동구역	⑤	18,606	-	18,606	대운동장, 농구장, 테니스장
	보존	녹지보존구역	⑥	38,764	-	38,764	배후녹지
소 계			167,743	-	167,743		
제2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⑦	2,226	-	2,226	역사관
	유지	상징경관구역	⑧	2,159	-	2,159	명원민속관
	보존	녹지보존구역	⑨	1,606	-	1,606	내부녹지
	소 계			5,991	-	5,991	
제3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-	10,498	-	10,498	서고시 제2015-376호 (2015.11.29.) 세부시설조성계획 완료
	보존	녹지보존구역	-	20,050	-	20,050	
	소 계			30,548	-	30,548	
제4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⑩	1,392	-	1,392	기숙사
	소 계			1,392	-	1,392	-
제5 캠퍼스	관리	일반관리구역	⑪	-	증 3,023	3,023	체육대학 및 평생교육원
	소 계			-	증 3,023	3,023	-
합 계			205,674	증 3,023	208,697	-	

2) 밀도계획(건폐율·용적률, 높이) 변경사항

연번	구분	열람(안)	수정가결 요청(안)	비고
3	밀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폐율·용적률계획 • 당초 건축계획에 따른 건폐율·용적률 기재 - 높이계획 • 변경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폐율·용적률계획 •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건폐율·용적률 기재 - 높이계획 • 변경없음 	수치변경

□ 열람(안)

○ 건폐율 계획

구분		밀도산정기준면적(㎡)		조례건폐율(%)		사용건폐율(%)		계획건폐율(%)		관리건폐율(%)		비고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제1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43,603	43,603	60.0	60.0	12.1	24.9	-	25.3	20.0	30.0	-
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121,115	121,115	30.0		30.0		-		30.0		
	소 계	164,718	164,718	38.0	60.0	25.3	24.9	-	25.3	30.0	30.0	
제2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5,991	5,991	30.0	30.0	27.8	27.8	-	27.8	30.0	30.0	-
	소 계	5,991	5,991	30.0	30.0	27.8	27.8	-	27.8	30.0	30.0	
제3 캠퍼스	제1종전용주거	22,692	22,692	50.0	50.0	14.96	-	-	15.0	15.58	15.6	-
	제2종일반주거	4,246	4,246	60.0	60.0							
	소 계	26,938	26,938	51.57	51.5	14.96	-	-	15.0	15.58	15.6	
제4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1,392	1,392	60.0	60.0	41.1	41.1	-	41.1	50.0	50.0	-
	소 계	1,392	1,392	60.0	60.0	41.1	41.1	-	41.1	50.0	50.0	
제5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-	135	-	60.0	-	-	-	44.5	-	50.0	금회 변경
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-	2,929	-								
	자연녹지	-	42	-	20.0							
	소 계	-	3,106	-	59.4	-	-	-	44.5	-	50.0	
합 계		199,039	202,145	39.7	57.9	24.0	21.4	-	24.4	28.0	28.6	

○ 용적률 계획

구분		밀도산정기준면적(㎡)		조례용적률(%)		사용용적률(%)		계획용적률(%)		관리용적률(%)		비고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제1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43,603	43,603	150.0	150.0	104.0	101.8	-	104.0	110.0	110.0	-
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121,115	121,115									
	소 계	164,718	164,718	150.0	150.0	104.0	101.8	-	104.0	110.0	110.0	
제2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5,991	5,991	150.0	150.0	34.0	33.7	-	33.7	80.0	80.0	-
	소 계	5,991	5,991	150.0	150.0	34.0	33.7	-	33.7	80.0	80.0	
제3 캠퍼스	제1종전용주거	22,692	22,692	116.0	116.0	38.0	-	-	37.2	50.0	50.0	-
	제2종일반주거	4,246	4,246									
	소 계	26,938	26,938	116.0	116.0	38.0	-	-	37.2	50.0	50.0	
제4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1,392	1,392	150.0	150.0	150.0	149.9	-	149.9	150.0	150.0	-
	소 계	1,392	1,392	150.0	150.0	150.0	149.9	-	149.9	150.0	150.0	
제5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-	135	-	150.0	-	-	-	147.8	-	148.6	금회 변경
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-	2,929									
	자연녹지	-	42	-	50.0							
	소 계	-	3,106	-	148.6	-	-	-	147.8	-	148.6	
합 계		199,039	202,145	146.0	145.4	94.0	85.0	-	94.0	100.0	102.0	

※ 기정 결정 고시근거 : 서고시 제2025-345호(2025.6.26)

※ 제1캠퍼스 밀도산정기준면적(164,718㎡) = 제1캠퍼스 총면적(167,743㎡) - 비오톱1등급지(3,025㎡)

※ 제3캠퍼스 밀도산정기준면적(26,938㎡) = 제3캠퍼스 총면적(30,548㎡) - 비오톱1등급지(3,610㎡)

※ 제5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(135㎡), 자연녹지지역(42㎡)는 330㎡이하로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함. (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 적용)

※ 건축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건폐율, 계획용적률 운영 변경

※ 건폐율, 용적률 : 소수점 첫째자리로 기재

○ 구역별 용적률 계획

구분	밀도산정기준면적(㎡)		조례용적률(%)		사용용적률(%)		계획용적률(%)		이전용적률(%)		관리용적률(%)		비고	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제1 캠퍼스	①일반관리	51,484	51,484	150.0	150.0	149.65	149.7	-	149.7	-	-	150.0	150.0	-
	②일반관리	8,182	8,182	150.0	150.0	139.24	139.3	-	139.3	-	-	140.0	140.0	
	③일반관리	19,766	19,766	150.0	150.0	207.10	207.1	-	207.1	+60.0	+60.0	210.0	210.0	
	④일반관리	30,941	30,941	150.0	150.0	135.34	123.8	-	135.4	-	-	150.0	150.0	
	⑤외부활동	18,606	18,606	150.0	150.0	0.27	0.3	-	0.3	-	-	5.0	5.0	
	⑥녹지보존	35,739	35,739	150.0	150.0	-	-	-	-	-33.0	-33.0	-	-	
제2 캠퍼스	⑦일반관리	2,226	2,226	150.0	150.0	72.72	72.8	-	72.8	-	-	80.0	80.0	-
	⑧상징경관	2,159	2,159	150.0	150.0	18.65	18.7	-	18.7	-	-	20.0	20.0	
	⑨녹지보존	1,606	1,606	150.0	150.0	-	-	-	-	-	-	-	-	
제3 캠퍼스	①일반관리	10,498	10,498	126.0	126.0	95.39	-	-	95.4	-	-	100.0	100.0	-
	②녹지보존	16,440	16,440	109.0	109.0	-	-	-	-	-	-	-	-	
제4 캠퍼스	⑩일반관리	1,392	1,392	150.0	150.0	149.85	149.9	-	149.9	-	-	150.0	150.0	-
제5 캠퍼스	⑪일반관리	-	3,106	-	148.6	-	-	-	147.8	-	-	-	148.6	금회 변경

※ 기정 결정 고시근거 : 서고시 제2025-345호(2025.6.26)

※ 제1캠퍼스 ⑥녹지보존구역 밀도산정기준면적(35,739㎡) = 제1캠퍼스 총면적(38,764㎡) - 비오톱1등급지(3,025㎡)

※ 제3캠퍼스 ②녹지보존구역 밀도산정기준면적(16,440㎡) = 제3캠퍼스 총면적(20,050㎡) - 비오톱1등급지(3,610㎡)

※ 건축배치계획에 따른 계획용적률 운영 변경

※ 용적률 : 소수점 첫째자리로 기재

○ 높이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관 리 높 이(m)		비 고	
	기 정	변 경		
제1 캠퍼스	①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②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③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④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⑤외부활동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-
	⑥녹지보존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-
제2 캠퍼스	⑦일반관리	• 지표면으로부터 +12m이하	• 지표면으로부터 +12m이하	-
	⑧상징경관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-
	⑨녹지보존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-
제3 캠퍼스	①일반관리	• 해발고도 128m이하	• 해발고도 128m이하	-
	②녹지보존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-
제4 캠퍼스	⑩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16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16m이하	-
제5 캠퍼스	⑪일반관리	-	• 해발고도 121m(4층)이하	금회 변경

※ 구역별 높이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높이계획 결정(변경)도 참조

※ 문화재보호구역 높이기준 :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지표면에서부터 7.5m 높이 이후 27°양각선 적용

- 해당구역 : ①~⑦, ⑨, ⑩구역

□ 수정가결 요청(안)

○ 건폐율 계획

캠퍼스	구분		밀도산정기준면적(㎡)		조례건폐율(%)		사용건폐율(%)		계획건폐율(%)		관리건폐율(%)		비고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제1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	43,603		60.0		12.1		-		20.0		-
	제1종일반주거(자연경관지구)	제1종일반주거	121,115	164,718	30.0	60.0	30.0	24.9	-	25.3	30.0	30.0	
	소 계		164,718	164,718	38.0	60.0	25.3	24.9	-	25.3	30.0	30.0	
제2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(자연경관지구)	제1종일반주거	5,991	5,991	30.0	30.0	27.8	27.8	-	27.8	30.0	30.0	-
	소 계		5,991	5,991	30.0	30.0	27.8	27.8	-	27.8	30.0	30.0	
제3 캠퍼스	제1종전용주거	제1종전용주거	22,692	22,692	50.0	50.0	14.96	-	-	15.0	15.58	15.6	-
	제2종일반주거	제2종일반주거	4,246	4,246	60.0	60.0							
	소 계		26,938	26,938	51.57	51.5	14.96	-	-	15.0	15.58	15.6	
제4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제1종일반주거	1,392	1,392	60.0	60.0	41.1	41.1	-	41.1	50.0	50.0	-
	소 계		1,392	1,392	60.0	60.0	41.1	41.1	-	41.1	50.0	50.0	
제5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	-		-								금회 변경
	제1종일반주거(자연경관지구)	제1종일반주거	-	2,981	-	60.0	-	-	-	43.9	-	50.0	
	자연녹지	자연녹지	-	42	-	20.0	-	-	-	-	-	-	
	소 계		-	3,023	-	59.4	-	-	-	43.9	-	50.0	
합 계			199,039	202,062	39.7	57.9	24.0	21.4	-	24.4	28.0	28.6	

○ 용적률 계획

캠퍼스	구분		밀도산정기준면적(㎡)		조례용적률(%)		사용용적률(%)		계획용적률(%)		관리용적률(%)		비고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제1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	43,603										-
	제1종일반주거(자연경관지구)	제1종일반주거	121,115	164,718	150.0	150.0	104.0	101.8	-	104.0	110.0	110.0	
	소 계		164,718	164,718	150.0	150.0	104.0	101.8	-	104.0	110.0	110.0	
제2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(자연경관지구)	제1종일반주거	5,991	5,991	150.0	150.0	34.0	33.7	-	33.7	80.0	80.0	-
	소 계		5,991	5,991	150.0	150.0	34.0	33.7	-	33.7	80.0	80.0	
제3 캠퍼스	제1종전용주거	제1종전용주거	22,692	22,692	116.0	116.0	38.0	-	-	37.2	50.0	50.0	-
	제2종일반주거	제2종일반주거	4,246	4,246									
	소 계		26,938	26,938	116.0	116.0	38.0	-	-	37.2	50.0	50.0	
제4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제1종일반주거	1,392	1,392	150.0	150.0	150.0	149.9	-	149.9	150.0	150.0	-
	소 계		1,392	1,392	150.0	150.0	150.0	149.9	-	149.9	150.0	150.0	
제5 캠퍼스	제1종일반주거		-										금회 변경
	제1종일반주거(자연경관지구)	제1종일반주거	-	2,981	-	150.0	-	-	-	148.0	-	148.6	
	자연녹지	자연녹지	-	42	-	50.0	-	-	-	-	-	-	
	소 계		-	3,023	-	148.6	-	-	-	148.0	-	148.6	
합 계			199,039	202,062	146.0	145.4	94.0	85.0	-	94.0	100.0	102.0	

※ 기정 결정 고시근거 : 서고시 제2025-345호(2025.6.26)

※ 제1캠퍼스 밀도산정기준면적(164,718㎡) = 제1캠퍼스 총면적(167,743㎡) - 비오톱1등급지(3,025㎡)

※ 제3캠퍼스 밀도산정기준면적(26,938㎡) = 제3캠퍼스 총면적(30,548㎡) - 비오톱1등급지(3,610㎡)

※ 제5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(135㎡), 자연녹지지역(42㎡)는 330㎡이하로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함. (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 적용)

※ 건축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건폐율, 계획용적률 운영 변경

※ 건폐율, 용적률 : 소수점 첫째자리로 기재

○ 구역별 용적률 계획

구분	밀도산정기준면적(㎡)		조례용적률(%)		사용용적률(%)		계획용적률(%)		이전용적률(%)		관리용적률(%)		비고	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제1 캠퍼스	①일반관리	51,484	51,484	150.0	150.0	149.65	149.7	-	149.7	-	-	150.0	150.0	-
	②일반관리	8,182	8,182	150.0	150.0	139.24	139.3	-	139.3	-	-	140.0	140.0	
	③일반관리	19,766	19,766	150.0	150.0	207.10	207.1	-	207.1	+60.0	+60.0	210.0	210.0	
	④일반관리	30,941	30,941	150.0	150.0	135.34	123.8	-	135.4	-	-	150.0	150.0	
	⑤외부활동	18,606	18,606	150.0	150.0	0.27	0.3	-	0.3	-	-	5.0	5.0	
	⑥녹지보존	35,739	35,739	150.0	150.0	-	-	-	-	-33.0	-33.0	-	-	
제2 캠퍼스	⑦일반관리	2,226	2,226	150.0	150.0	72.72	72.8	-	72.8	-	-	80.0	80.0	-
	⑧상징경관	2,159	2,159	150.0	150.0	18.65	18.7	-	18.7	-	-	20.0	20.0	
	⑨녹지보존	1,606	1,606	150.0	150.0	-	-	-	-	-	-	-	-	
제3 캠퍼스	①일반관리	10,498	10,498	126.0	126.0	95.39	-	-	95.4	-	-	100.0	100.0	-
	②녹지보존	16,440	16,440	109.0	109.0	-	-	-	-	-	-	-	-	
제4 캠퍼스	⑩일반관리	1,392	1,392	150.0	150.0	149.85	149.9	-	149.9	-	-	150.0	150.0	-
제5 캠퍼스	⑪일반관리	-	3,023	-	148.6	-	-	-	148.0	-	-	-	148.6	금회 변경

※ 기정 결정 고시근거 : 서고시 제2025-345호(2025.6.26)

※ 제1캠퍼스 ⑥녹지보존구역 밀도산정기준면적(35,739㎡) = 제1캠퍼스 총면적(38,764㎡) - 비오톱1등급지(3,025㎡)

※ 제3캠퍼스 ②녹지보존구역 밀도산정기준면적(16,440㎡) = 제3캠퍼스 총면적(20,050㎡) - 비오톱1등급지(3,610㎡)

※ 건축배치계획에 따른 계획용적률 운영 변경

※ 용적률 : 소수점 첫째자리로 기재

○ 높이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관 리 높 이(m)		비 고	
	기 정	변 경		
제1 캠퍼스	①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②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③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④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	-
	⑤외부활동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-
	⑥녹지보존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-
제2 캠퍼스	⑦일반관리	• 지표면으로부터 +12m이하	• 지표면으로부터 +12m이하	-
	⑧상징경관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	-
	⑨녹지보존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-
제3 캠퍼스	①일반관리	• 해발고도 128m이하	• 해발고도 128m이하	-
	②녹지보존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•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-
제4 캠퍼스	⑩일반관리	• 지표로부터 최대 16m이하	• 지표로부터 최대 16m이하	-
제5 캠퍼스	⑪일반관리	-	• 해발고도 121m(4층)이하	금회 변경

※ 구역별 높이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높이계획 결정(변경)도 참조

※ 문화재보호구역 높이기준 :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지표면에서부터 7.5m 높이 이후 27°양각선 적용

- 해당구역 : ①~⑦, ⑨, ⑩구역

3) 변경 건축물 조서 변경사항

연번	구분	열람(안)	수정가결 요청(안)	비고
4	건축물조서	- 당초 건축계획 기재	- 변경 건축계획 기재	수치변경

□ 열람(안)

○ 변경 건축물 조서

구분	구역	건물명	건축면적(㎡)		연면적(㎡)		지상층연면적(㎡)		층수(지하)		비고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제5캠	⑪일반	교육연구동	-	1,380.54	-	11,288.33	-	4,590.50	-	4(4)	금회신축
합 계			-	1,380.54	-	11,288.33	-	4,590.50			

※ 건축물의 규모,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상세내용은 결정도면에 의함.

□ 수정가결 요청(안)

○ 변경 건축물 조서

구분	구역	건물명	건축면적(㎡)		연면적(㎡)		지상층연면적(㎡)		층수(지하)		비고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제5캠	⑪일반	교육연구동	-	1,326.94	-	10,985.24	-	4,474.04	-	4(4)	금회신축
합 계			-	1,326.94	-	10,985.24	-	4,474.04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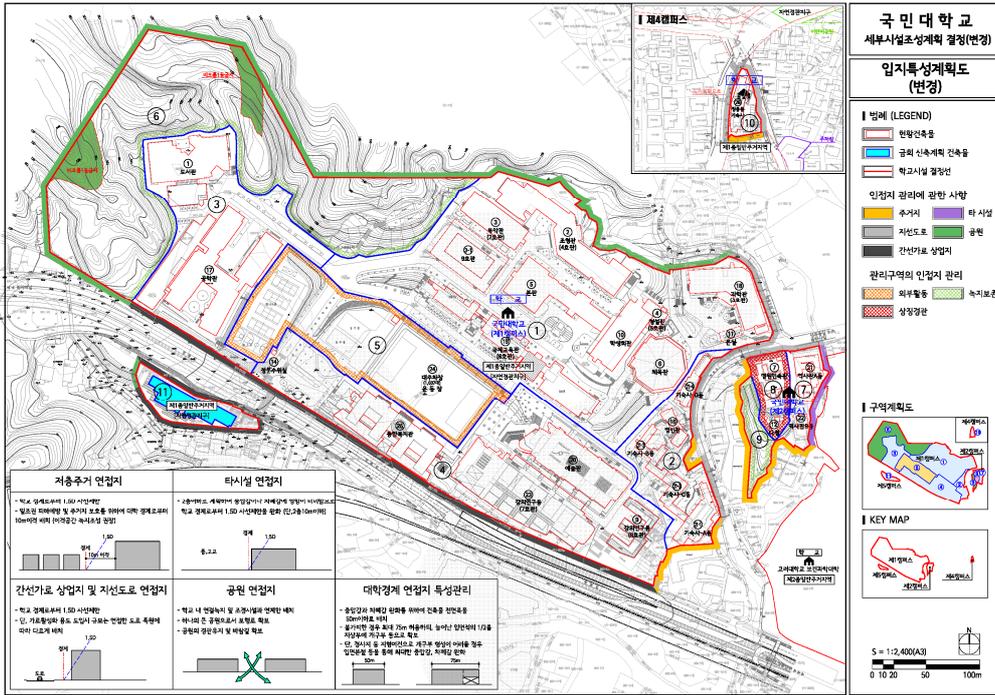
※ 건축물의 규모,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상세내용은 결정도면에 의함.

서울특별시

다. 입지특성계획 변경사항

연번	구분	열람(안)	수정가결 요청(안)	비고
5	입지특성계획	- 지선도로	- 간선가로 상업지 연결지 - 저층주거 연결지 - 학교등시설 연결지	현황여건을 고려하여 변경

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 도면 [열람(안)]



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 도면 [수정가결 요청(안)]

